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11

발의연월일: 2021. 5. 14.

발 의 자:김경만・양정숙・윤재갑

이동주 · 김영주 · 윤건영

민형배 • 이규민 • 김정호

양향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·신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역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.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자금부족(32.8%)과 인력확보 어려움(18.0%)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,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, 적용기한을 20 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한편,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 득·이전·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고, 연구개발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, 제1 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가목1)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40"으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"100분의 20"을 "100분의 30"으로, "100분의 25"를 "100분의 35"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
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각 과	세액공제) ①
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	
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연구	
·인력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	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	
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	
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	
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	
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	
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발생한	<u>2024년 12월 31일</u>
해당 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해	
서만 적용한다.	
1. 연구・인력개발비 중 대통령	1
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・원천	
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	
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	
천기술 연구개발비"라 한다)	
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	
발생한 신성장・원천기술 연	
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	
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	

하여 계산한 금액 가.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

- 1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: 100분의 30
- 2) 그 밖의 경우: 100분의 20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 중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코스닥상장중견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 100분의 25]

나. (생 략)

2. · 3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10조의2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) ① 내국인이 2 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연구개발출연금등"이라 한다)을

プト
1)
<u>100</u> 분의 40
2) <u>100분의</u>
<u>30</u>
<u>100분의 35</u> -
나. (현행과 같음)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연구개발 관련 출연금
등의 과세특례) ①2
024년 12월 31일

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 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 략)

제12조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·개발한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또는 기술(이하 이 조에서 "특허권등"이라 한다)을 2021년 1 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)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② (생 략)
-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·개발한 특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
에 대한 과세특례) ①
2024년 1
2월 31일
<u> 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
허권등	을 <u>20</u>	<u> 21년</u>	12월	31일	<u>!</u> 까
지 대	여(대통	통령령	으로	정히	는
특수관	계인에	계대	비여한	경우	는
제외한	다)함으	으로써	빝	날생히	는
소득에	대하	여는	해당	소득	에
대한 2	소득세	또는	법인	세의	10
0분의	25에	상당	하는	세앤]을
감면한	다.				

④・⑤ (생략)

<u>2024년 12월 31일</u> -
④·⑤ (현행과 같음)